



#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
The Korean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

수신자 기관(병원)장

(경유) 사회사업실(과)장, 정신건강사회복지사

제 목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  
개최의 건

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,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·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(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등)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3. 본 협회에서는 ‘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’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, 귀 기관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행 사 명 :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

나. 일 시 : 2020년 8월 14일(금) 09:00 ~ 18:00 (08:30부터 접수)

다. 장 소 :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

※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(수정동)

라. 대 상 :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련생

마. 인 원 : 100명

바. 이수시간 : 8시간

사. 접수기간 : 2020년 7월 14일(화) 00:00 ~ 2020년 8월 5일(수) 24:00 까지

※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.

아. 접수방법 : 국립정신건강센터 ‘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’ 홈페이지(붙임 참조)

자. 교 육 비 : 56,000원 (식사비 미포함 금액 / 온라인 신청 후 이니시스 결제 진행)

**(당해연도 협회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식사비 현금지급)**

차. 유의사항 : 신분증 필수 지참, 개인정보(소속, 연락처 등) 확인

**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물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카. 문 의 : 협회 사무국 송유선 주임 (02-702-5638, kamhsw@hanmail.net)

#. 붙임 :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 안내문 1부.  
끝.

## 한 국 정 신 건 강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장



---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담 당 | 송유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장 | 박지혜         | 협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경 |
| 협조자 | 교육연구위원장 박현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시행  | 한정사협(자) 20-184 ( 2020.07.10 ) 접수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우   |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,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|     |             | <a href="http://www.kamhsw.or.kr">/http://www.kamhsw.or.kr</a> |     |
| 전화  | 02-702-56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송  | 02-701-5632 | <a href="mailto:kamhsw@hanmail.net">/kamhsw@hanmail.net</a>    | /공개 |

[붙임]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
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
제6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(부산) 안내

I. 사업개요

1. 행 사 명 :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
2. 목 적 :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임상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중독문제에 대해 선별과 평가, 동기강화를 돕는 단기개입(SBIRT)을 이해하여 개입과 실천을 돕고자 함.
3. 주 제 : 중독문제에 대한 특성과 상담, 중독문제에 대한 단기개입(SBIRT)
4. 일 시 : 2020년 8월 14일(금) 09:00 ~ 18:00 (08:30부터 접수)
5. 장 소 :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
6. 대 상 :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련생
7. 인 원 : 100명
8. 이수시간 : 8시간 (1,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동일)
  - ※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(총 8시간)이 인정됩니다.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오전 혹은 오후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(보건복지부 답변)합니다.
  - ※ 이수 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필히 지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
9. 교 육 비 : 56,000원 (정회원, 수련회원, 특별회원, 비회원 동일)
  - ※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(당해연도 협회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식사비 현금지급)
  - ※ 교육비 납부 방법 : 국립정신건강센터→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→보수교육 신청 후 KG이니시스 결제진행 (결제방법 : 카드,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)
  - ※ 교육비 영수증 :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-mail로 자동 발행
10. 접수기간 : 2020년 7월 14일(화) 00:00 ~ 8월 5일(수) 24:00 까지
  - ※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완료
11. 유의사항 : 신분증 필수 지참, 개인정보(소속, 연락처 등) 확인  
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물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## II. 교육안내

### 1.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

|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8:30 ~ 09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전 교육 등록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9:00 ~ 11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독문제 대한 상담(동기강화상담 중심)<br>강사 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:00 ~ 13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화단계 모델을 통한 중독문제 접근<br>강사 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:00 ~ 14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심시간 및 오후 교육 등록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:00 ~ 18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독문제에 대한 단기개입(SBIRT) 이해하기<br>(문제성 음주(약물), 문제성 도박, 인터넷/게임 고위험군 단기개입)<br>강사미정 |

## III. 등록안내

### 1. 등록

- 접수기간 : 2020년 7월 14일(화) 00:00 ~ 8월 5일(수) 24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사전접수 (**당일 현장접수 없음**)
  - 국립정신건강센터 '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' (<http://www.ncmh.go.kr/>) 로그인
  -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<보수교육> 메뉴의 '보수교육 신청 일정'으로 이동
  - 2020년 8월 7일(금) '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' 교육 안내 클릭
  - 하단의 '신청' 버튼 클릭 후 교육비 결제 진행 (결제방법 : 카드,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)**
- 교육비 : 56,000원
  - ※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(**단,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점심식사비 현금지급**)
  - ※ **교육비 영수증 :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-mail로 자동 발행**
- 유의사항
  -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**
  - 교육 관련 메일링 또는 SMS의 원활한 발송과 교육이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개인 정보(소속 / 연락처 / 이메일)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개인정보 수정 요망

## 2. 취소

### 1) 취소신청 방법

- (1) 국립정신건강센터 ‘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’ (<http://www.ncmh.go.kr/>) 로그인
- (2)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<보수교육> 메뉴의 ‘보수교육 신청 일정’으로 이동
- (3) 2020년 8월 14일(금) ‘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- 개별과정(부산)’ 공지 클릭
- (4) 하단의 ‘취소’ 버튼 클릭 후 환불처리 진행

### 2) 교육비 환불기준(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 환불 규정 기준)

|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취소(환불신청)시점           | 제6차 법정보수교육 기준         | 환불금액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6차<br>법정보수교육 -<br>개별과정(부산)<br>8월 14일(금) | 해당 교육일로부터<br>5일전까지     | ~ 8월 9일(일) 까지         | 100% 전액<br>환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일 4일전부터<br>교육일 2일전까지 | 8월 10일(월) ~ 8월 12일(수) | 50% 환불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일 전일부터<br>교육당일까지     | 8월 13일(목) ~ 8월 14일(금) | 환불불가          |

## IV. 법정 보수교육 안내

### 1. 법정보수교육 대상

- 근거법령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보수교육)제1항
-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(이하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수교육 대상 |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|
| 보수교육 방법 |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                |
| 보수교육 시간 | 매년 12시간 이상(공통과정 4시간 이상 + 개별과정 8시간 이상)       |

### 2.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

- 근거법령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보수교육)제2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수교육 면제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<br>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|
| 보수교육 유예 |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■ 면제자

| 면제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명서류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신규자격증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증사본               |
| 간호, 심리, 사회복지, 보건전공 관련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|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        |
| 군복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적증명서               |
| 육아휴직자(6개월 이상)                     | 육아휴직 관련 기관 내부 공식 기안 |
| 간호학, 사회복지학, 임상심리학 대학 교수(전임강사 이상)  |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|

■ 유예자

| 유예 대상자              | 증명서류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(6개월 이상) | 진단서(기간표시) |

※ 법정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.

■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 청 자 | 해당연도 법정보수교육에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하는 자                |
| 신청시기  |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연도의 법정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신청 |
| 제출서류  | 법정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관련증명서류                   |
| 신청방법  | 관련증명서류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               |

### 3. 미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한 소급 적용

■ 면제·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<br>당해 근무 기간이 | 6개월 이상일 경우 |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.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미만일 경우 | 복귀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. |

■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자의 해당 연도 교육 시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~ 2년 미만일 경우 | 해당연도 12시간 + 소급 4시간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예 기간이 2년 이상 ~ 3년 미만일 경우 | 해당연도 12시간 + 소급 8시간 이상<br>(공통 4시간 이상, 개별 8시간 이상)  |
| 유예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        | 해당연도 12시간 + 소급 12시간 이상<br>(공통 4시간 이상, 개별 8시간 이상) |

#### 4. 이수확인증 신청 방법

- 정신건강전문요원 : 국립정신건강센터 - 보수교육 이수내역 - 해당교육 이수증 출력
-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: 협회 이메일([kamhsw@hanmail.net](mailto:kamhsw@hanmail.net))로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발급 신청 메일 발송(교육일 기준 2주 후 발급하여 회신)

1. 성함 / 2. 생년월일 / 3. 소속기관 / 4. 자격급수 / 5. 참석한 법정보수교육 차수와 개최 날짜

#### V. 연회비 안내

1. 연 회 비 : 연 50,000원
2. 입금계좌 : 하나은행 128-910012-08904 (예금주 :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)

#### [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]

**제8조(회원의 의무)**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9.14.> <개정 2018.04.13.>

- ① 본 회의 회칙,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#### **제9조(회원의 권리)**

- ①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14.02.28.>

#### **제10조(권리의 제한과 회복)** <신설 2012.09.14.>

- ①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기간이 과거 누적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. <개정 2018.04.13.>
-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4.13.>
  1.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18.04.13.>
  2.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회원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회복을 승인받아야 한다. <신설 2018.04.13.>
- ③ 회원의 탈퇴 및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8.04.13.>

## Ⅶ. 협회원 가입 안내

1. 가 입 비 : 20,000원 (최초 1회 납부)
2. 연 회 비 : 연 50,000원
3. 입금계좌 : 하나은행 128-910012-08904 (예금주 :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)
4. 구비서류 (홈페이지 자료실 '각종 서식 및 기타자료' 게시판 참고)
  - 1) 가입원서 1부
  - 2) 사진 2매
  - 3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
  - 4)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증명서 각 1부 (송금증 및 이체확인증)
  - 5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3자 · 제공 동의서
5. 제출처 : (05719)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,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

※ 협회원 가입 여부는 본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amhsw.or.kr>)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개인정보 수정 > 회원구분 에서 확인 가능하며, 비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구분에 '손님, 일반, 조정'으로 표기됨.

## VII. 오시는 길

- ▶ 주소 :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  
 ※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(수정동)



### ▶ 교통편

<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>

- 네비게이션에 '부산동구청' 검색

< 버스를 이용할 경우 >

- 부산역, 여객터미널에서 탑승

▪ 수정시장에서 하차하는 시내버스 노선안내

| 노선번호 | 기점      | 종점(회차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87   | 망미주공아파트 | 까치고개   |

▪ 동구청에서 하차하는 마을버스 노선안내

| 노선번호 | 기점         | 종점(회차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동구2번 | 수정아파트 5호동뒤 | 동구청    |

▪ 부산진역에서 하차하는 시내버스 노선안내

| 노선번호 | 기점       | 중점(회차)     | 노선번호 | 기점       | 중점(회차)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2    | 다대포      | 자유시장       | 17   | 감천2동     |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|
| 22   | 용호동      | 수정5동 수정삼거리 | 26   | 감만동      | 송도          |
| 27   | 용호동      | 총무동        | 40   | 해운대 신시가지 | 구덕운동장       |
| 41   | 민락동      | 총무동        | 43   | 반여동      | 중앙공원        |
| 52   | 반여3동     | 수정4동       | 59   | 화명동      | 부산역         |
| 61   | 신평       | 서부터미널      | 67   | 개금아파트    | 염곡동 남태평양호텔  |
| 81   | 초읍동      | 서대신동       | 82   | 청학2동     | 전포동 화신아파트   |
| 85   | 봉래동 청학고개 | 부암동        | 88   | 태종대      | 당감동         |
| 101  | 태종대      | 대연사거리      | 103  | 장림동      | 부전시장        |
| 134  | 용당       | 남부민동       | 139  | 송정       | 총무동         |
| 167  | 개금아파트    | 동아대병원      | 1000 | 다대포      | 서면롯데백화점     |
| 1001 | 해운대 신시가지 | 하단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
▪ 수정시장에서 하차하는 시내버스 노선안내

| 노선번호 | 기점      | 중점(회차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87   | 망미주공아파트 | 까치고개   |

▪ 동구청에서 하차하는 마을버스 노선안내

| 노선번호 | 기점         | 중점(회차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동구2번 | 수정아파트 5호동뒤 | 동구청    |

<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>

●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 하차 1,3,5,7번 출구

▶ 주차

※ 부산 동구청 주차장 이용 : 10분당 300원, 일 최대 8,000원

■ 구청 내 주차장(지하2층 - 지상1층)만 사용 가능

■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 야외주차장(구청 진입로 좌측) 절대 사용 금지

※ 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